

2026년도 국가유산형 사회연대경제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국가유산청과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은 국가유산 분야 민간의 관리와 활용 주체를 확대하고, 국가유산 산업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2026년 국가유산형 사회연대경제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을 추진하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 02. 10.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이사장

1

모집 개요

- 사 업 명 : 2026년 국가유산형 사회연대경제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 모집대상 : 아래 둘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함
 - 국가유산*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사회연대경제 조직***
 - 국가유산 관련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회연대경제 조직으로 진입할 계획이 있는 법인(개인)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단체)

***국가유산이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 · 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 · 예술적 · 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 · 자연유산 · 무형유산을 의미합니다. *“문화재”→ “국가유산”으로 명칭 변경

국가유산 관련 사업 영역(예시)	*국가유산 관련 사회연대경제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①국가유산 보존·관리(재난안전)②무형유산 전승 및 계승③근현대유산, 산업유산, 디지털유산, 비지정 문화유산, AI활용 등 확장된 국가유산 영역④국가유산 활용 교육, 문화콘텐츠 개발, 관광업, 도시재생사업, 디지털 컨텐츠 등 연관 산업 융합	국가유산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인증 사회적기업,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지정기간 만료 포함),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을 포함합니다.

지원 시 참고사항

과거 사업개발비 지원 이력이 있는 기업이라도, 사업의 확대, 고도화 또는 신규 사업모델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가능

지원 제외 대상

- ① 올해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유사한 사업에 대해 사업개발비, 사업비 등 유사한 항목으로 재정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기업
- ② 과거 부정 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 해지된 기업
- ③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규범 등을 위반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지원 내용

지원구분	지원 내용
사업개발비	국가유산 보전·활용 관련 사업개발비* 지원 *연구개발(R&D), 시제품 제작, 홍보마케팅, 판로, 각종 인증 획득 비용 등
성장지원 프로그램	1. 컨설팅 지원 *전문컨설팅, 사회적기업 진입 컨설팅, SVI(사회가치지표) 컨설팅 2. 역량강화 교육 및 네트워크 프로그램 3. 판로지원 (STORE365 특별전 등)

○ 모집 분야 및 지원신청액 (아래 두 분야 中 택 1)

구분	내용	지원신청액(가능)
성장 분야	기존에 수행 중인 국가유산 관련 사업을 보완·개선하여 성장 도모 ※ 기존 국가유산 사업 현황 내용 필수 기재	최대 4천만 원 이내
자립 분야	국가유산 관련 신규 사업 모델 개발	최대 2천만 원 이내

- 자부담 금액 : 국가유산형 사회연대경제 사업개발비 지원 횟수에 따라 차등 적용

자부담 금액 산정 방법	
<p>1. 부가가치세는 기업이 별도로 부담하며, 자부담 금액 산정 시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않음</p>	<p>2. 자부담 비율 (지원 횟수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회차 지원 : 지원신청액(보조금)의 10% 부담 - 2회차 지원 : 지원신청액(보조금)의 20% 부담 - 3회차 지원 : 지원신청액(보조금)의 30% 부담 - 4회차 이상 지원 : 지원신청액(보조금)의 30% 부담

- 사업 기간 : 2026년 3월(약정체결일)~12월 (*11월 예산 집행 마감)

- 사업 진행 단계 및 일정

공고 및 접수	서면심사	대면심사	최종결과발표
2.10.(화) ~ 3.2.(월) 이메일 접수 (kh@jfu.kr)	3.3.(화) ~ 3.5.(목) 결과발표: 3.6.(금) 신청서 기반 1차 심사	3.17.(화) 기업별 PT 심사 (발표 7분 + 질의응답 7분)	3.20.(금) 선정 기업 발표
1차 워크숍	1차 보조금 교부	2차 워크숍	3차 워크숍
3월 넷째 주 中 1일 *일정 변동 가능 약정 체결 및 사업 안내	~3월 말 총 지원금의 50% 지급	4월 셋째 주 역량강화 교육	8월 초 중간 성과 점검
2차 보조금 교부	최종 정산	성과공유회	
8월 말 총 지원금의 50% 지급	11월 말 사업비 정산 및 검토	12월 사업 성과 발표 및 네트워킹	

- 주최: 국가유산청 / 주관: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 신청기간 : 2026년 2월10일(화) ~ 3월2일(월) *기한엄수
- 신청방법 : 이메일 (kh@jfu.kr) 제출
 - * 파일명은 [국가유산형 사업개발비 - 기업명]으로 표기
- 제출서류 : 반드시 아래 설명대로 준비 및 제출

구분	연번	제출서류	비고
필수 제출 서류	1	제출서류 자가체크리스트	[붙임 1] 서식 참고
	2	사업 신청서 : 반드시 한글파일로 제출	[붙임 2] 서식 참고
	3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붙임 3] 서식 참고
	4	사업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확인서	[붙임 4] 서식 참고
	5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	[붙임 5] 서식 참고
	6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증 1부	법인의 경우 2개 모두 제출
	7	[해당 시 제출]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해당하는 유형 관련 서류 모두 제출	-사회적기업 인증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마을기업 지정서, 자활기업 인정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협동조합 설립신고증
	8	2024, 2025년 재무제표 * 2025년 재무제표 제출이 어려운 경우 ① 가결산 자료 ② 부기기록세 고시제준증명 ③ 가계별 합계표(전자서금계산서 합계표) 중 택 1 * 아래 8번 작성할 필요 없음	-법인은 전문가 확인을 받은 자료 일체 제출 *2024, 2025년도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등
	9	2025년 수지계산서 * 위 7번 자료(재무제표 등) 없는 경우만 작성	[붙임 6] 서식 참고
	10	제출기업 현황표: 반드시 Excel 파일로 제출	[붙임 7] 서식 참고
	11	대면심사용 발표자료 * PDF(PPT 파일 변환하여 PDF 파일 제출)	[붙임 8] PPT 작성파일 참고 -대면심사 대상기업은 자료 수정 기간 제공 예정 -7분 발표이므로 적정 페이지로 작성
선택 제출 서류	1	기업소개서, 포트폴리오, IR 등 기업 경영 및 사업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 PDF파일로 제출	* IR(investor relations) :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기업의 경영활동 및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자 할 때 작성하는 양식. 주로 기업현황, 사업개요, 재무제표, 투자제안 내용 등을 포함함

- 접수처 :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협력사업팀

☎ 02-2135-1816, ✉ kh@jfu.kr

- 심사 절차 : 1차 서면심사 → 2차 대면심사(PT)
- (1차 서면심사) : 2026년 3월 3일(화) ~ 3월 5일(목)
 - 국가유산 분야 보존 및 활용성, 기업 성장성, 사회적 가치 창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
 - 결과 발표: 2026년 3월 6일(금) ※ 대면 심사 대상 기업에 개별 안내 예정
- (2차 대면심사) : 2026년 3월 17일(화)
 - 기업별 발표 7분, 질의응답 7분
 - 심사 항목에 의거하여 고득점 순으로 기업 선정 및 지원액 결정
 - 결과 발표: 2026년 3월 20일(금) ※ 최종 선정 기업에 개별 안내 예정
 - 심사 항목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항목
사업 계획 (30)	지원필요성(10)	- 지원의 필요성, 수익모델 개발 가능성, 파급효과
	계획적정성(20)	- 사업계획의 충실성, 사업 내용 및 용도의 타당성, 시행가능성 등
기업 성장성 (30)	성장가능성(20)	- 최근 3년간 매출액 증가율(신생기업 등 측정불가 시 정성평가)
	기업혁신성(5)	- 사회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조직운영과정 및 제품혁신 가능성
	차별성(5)	- 국가유산 분야를 활용해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의 기존 시장과의 차별성, 독창성
국가유산 분야 사회적 가치 창출(40)	사회적가치 창출 정도 및 파급력 등(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유산 분야 사회문제 해결 지향적 제품 및 서비스, 사회적 영향력 및 혁신적 접근 방법 - 예상되는 사회적기지의 파급력 및 지역사회기여도 - 예비기업인 경우, 인증전환 가능성 - 예비기업이 아닌 경우, 지정신청 의지 및 가능성
	예비사회적기업 적합성(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유산형 예비사회적기업 이해, 전환 계획, 준비정도, 지정 가능성

4

사업개발비 신청(사용) 기준

신청가능 항목	신청불가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브랜드(로고), 기술개발 등 R&D비용 - 홍보·마케팅·부가서비스 개발 (직접적인 홍보자료/동영상 제작 등) - 서비스, 판매관련 시장수요조사 비용 (수립 전략에 근거한 사업다각화 비용) - 시제품개발비용(재료비용 포함) - 예술·공연 기획 등 새로운 상품·서비스 개발 - 제품의 성능 및 품질개선 비용 - BS/AS 등 고객관리 비용 - 특허·출원 등 인증 취득비 - 신규사업 진출 및 전략적 사업모델 발굴 비용 - 홈페이지 개발·구축, 기존 홈페이지를 활용한 홍보 및 쇼핑몰 페이지 구축을 위한 개발비용 - 판로개척을 위한 컨퍼런스, 행사 등 참여 또는 운영 소요되는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기업의 인건비, 퇴직적립금, 근로자 복지 비용 - 수익모델 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시스템 구축 비용 - 유형의 시설장비 등 자본재 구입비용 * 자본재 리스의 경우 자부담비율 50%이상을 조건으로 사업수행 내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사무용품, 공과금, 사무실 임차료 등 관리운영비 - 인사노무·회계·경영컨설팅 비용 - 시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재료비는 지원신청액(보조금)의 20% 이내만 인정 - 상품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 회계감사비용, 소송대리비용 - 보험료, 기부금, 자금조달비용(대출이자), 각종 세금(부가세 등) - 기타 사업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 - 그밖에 국가유산청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비용

5

유의사항

1.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소요 비용은 신청기업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고, 제반 서류 일체를 반환하지 않음
2. 사업 신청기관이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판명 될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 이후라도 동 사실이 확인 될 경우 선정 취소 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
3.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자료 일체는 비공개로 하며, 심사 결정 사항에 대하여 이의제기는 할 수 없음

4. 부정 수급이 적발될 경우, 지원금 반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
5. 사업 신청서 관련 유의사항
 - 동 사업은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신청 관련 문서에 기재한 내용은 공공의 목적으로 공개될 수 있음
 - 신청서를 제출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으므로, 제출 전 기재사항 확인 요망
 - 최종 선정이 확정된 사업이라도 일부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불이행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6. 사업비 관련 유의사항
 - 선정된 후 지원심의 시 보조금 배정 기준에 의거하여 지원 결정액이 축소·조정될 수 있음
 - 총사업비 = 지원신청액(보조금)+자부담금액(신청액의 10~30%), 자부담금액 비율은 선정 후에도 유지해야 함
 - 사업종료 시 총사업비에 해당하는 내용은 정산 증빙 필수

6

문의처

- 국가유산청 교육활용과 ☎ 042-481-4818
-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협력사업팀
☎ 02-2135-1816, ✉ kh@jfu.kr

1. 개인사업체도 참여 가능한가요?

네. 개인사업체도 참여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 설립 및 사회연대경제 조직으로 진입할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2.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되었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만료된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부처형 및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성장 분야와 자립 분야 모두 지원 가능한가요?

아니요. 두 개 분야 중 하나만 선택하여 지원해야 합니다.

4. 재무제표 제출 관련 문의

2025년 재무제표 제출이 어려운 경우, 다음 서류*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가결산 자료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거래처별 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5. 과거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을 받은 경우, 자부담 횟수에 포함되는지?

고용노동부 또는 시·도에서 시행한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이력은 자부담 횟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부담 횟수는 「**국가유산형 사회연대경제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에 한하여 적용됩니다.